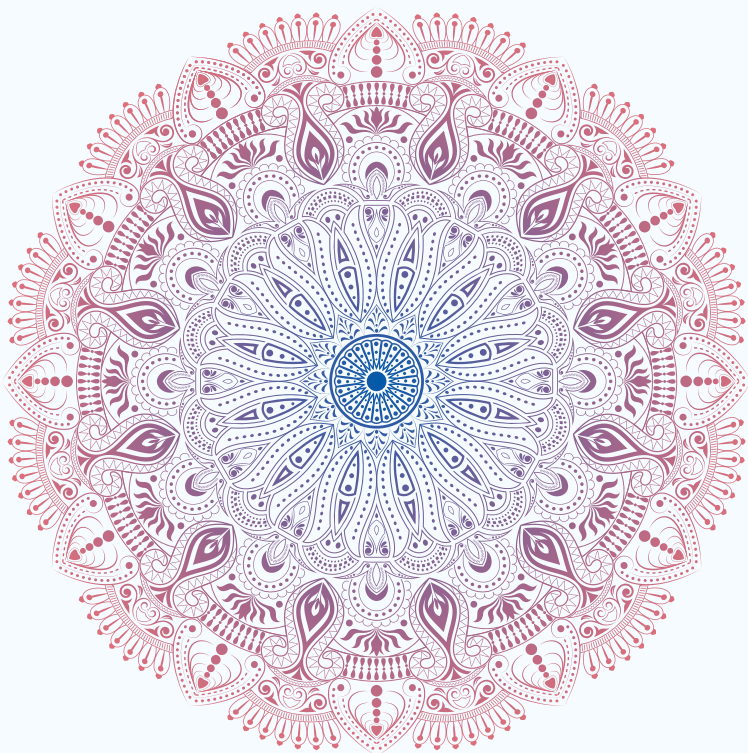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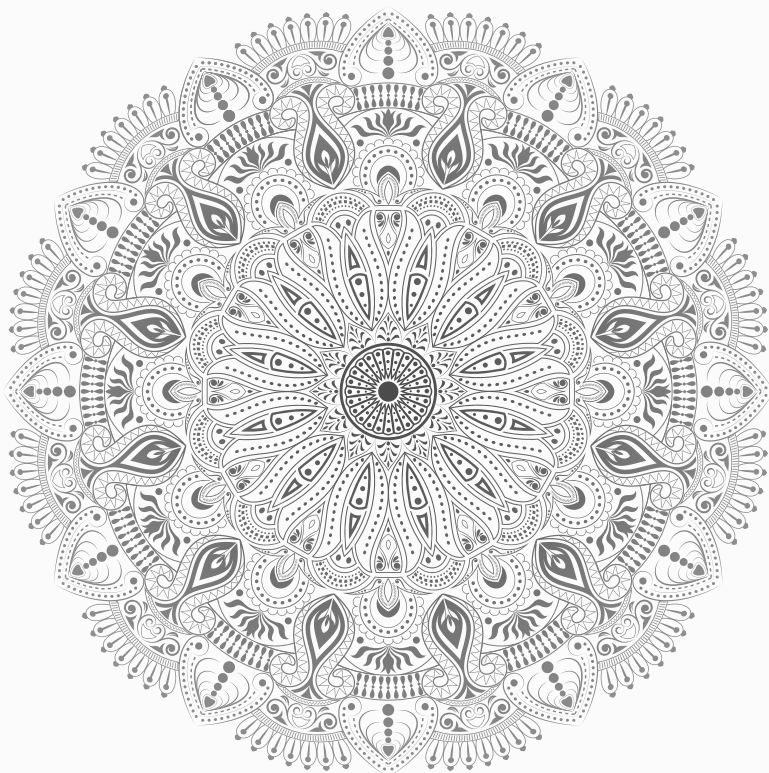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국가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

러시아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러시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Contents

러시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제1장. 러시아 저작권 개요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6
2.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7
3.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종류	9
4. 저작인접권	12
5. 권리 보호기간	15
6.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16

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1. 저작권 등록기관	20
2.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절차	20
3. 일반 저작물 등록비용	21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의 양도	24
2.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	24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1. 저작권 침해	28
2. 민사소송	28
3. 형사소송	30
4. 행정적 구제조치	31
5. 국경조치(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32
6.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33
7.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경고장 발송	38

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42
2. 민간단체	44

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48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50

<분쟁 사례>	50
---------	----



제1장

러시아 저작권 개요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2.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3.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종류
4. 저작인접권
5. 권리 보호기간
6.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러시아는 이전에 별도로 존재하던 지식재산권법을 법률 개정을 통해 러시아 민법 제4부에 포함하였다. 민법 제4부 제70장과 제71장이 각각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조약(WPPT), TRIPs 협정,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들 조약과 그 내용을 반영한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외국 저작물도 러시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저작자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이라면 그 가치나 목적 및 표현 형태를 불문하고 러시아 민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민법 제1259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 객체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어문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 연극 및 악극 저작물
- 무용 및 무언극 저작물
- 가사의 존재 여부를 불문한 음악 저작물
- 시청각 저작물
- 회화, 조각, 그래피티, 디자인, 만화, 기타 미술저작물
- 장식, 응용미술 및 무대예술 저작물
-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에 관한 저작물
- 사진 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 지리학적 또는 기타 지도, 도면, 스케치 및 지리학, 지형학 및 기타 학술과 관련한 조소 저작물
- 기타 저작물

위 대상 외에도 원저작물을 가공, 영상화, 편곡, 무대화한 이차적 저작물과 소재를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한 편집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제1259조 제2항 및 제1260조¹⁾). 또한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으로, 독립적으로 저작자의 창작적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의 명칭과 캐릭터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제1259조 제7항).

한편 아이디어, 사상, 개념, 원칙, 방법, 시스템, 사실, 발견, 프로그램 언어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제1259조 제5항). 또한 국가기관이나 국제조직의 공문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징과 문장,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간예술 또는 민간전승, 단순히 정보제공 성질을 가지는 사상과 사실의 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259조 제6항).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가. 업무상 저작물

종업자가 고용 등으로 정해진 노동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창작할 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종업자에게 귀속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한다(제1295조). 따라서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이며, 종업자는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수를 얻을 뿐이다.

사용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①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 배타권을 타인에게 이용허락하지 않거나 ③ 저작물이 비밀임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배타적 권리가 종업자에게 반환된다.

1) 이하 '러시아 연방 민법'은 법률명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나. 외국 저작물의 보호

다음에 해당하는 학술, 문학, 예술 저작물은 러시아 민법 제1256조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외국 저작물도 보호 가능하다.

- 러시아 영역 내에서 공표되었거나, 공표된 것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역 내에서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저작물로서 저작자의 러시아 시민권 여부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
- 러시아 영역 외에서 공표되었거나, 공표된 것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역 외에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저작물로서 러시아 국적의 저작자가 소유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
- 러시아 영역 외에서 공표되었거나, 공표된 것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역 외에서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저작물로서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저작자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

이때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은, 저작물이 원래 발생한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러시아 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모두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의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생한 외국의 권리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종류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저작자임을 인정받을 권리, 저작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등이 인정된다(제1255조 제2항). 이 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며, 나머지인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저작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저작자의 비재산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이다.

가. 저작재산권

지적 활동의 성과 중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러시아 민법 제127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이용 형태와 수단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행사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저작물의 복제
- 저작물 원본 또는 사본의 판매 기타 양도에 의한 배포
- 저작물 공공전시
- 배포 목적으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수입하는 행위
- 저작물 원본 또는 사본의 대여
- 저작물의 공공 실연
- 무선에 의한 저작물 공공전달
- 유선, 케이블에 의한 저작물 전달
- 저작물의 중계방송 또는 재송신
- 저작물의 번역과 파생 저작물의 창작(개작, 영화화, 편곡, 무대화 등)
- 건축, 설계, 도시계획 시행
- 저작물의 공중 전달(공중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저작물 전달)

•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과 원 저작물의 이용(제1240조)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시청각 저작물을 제작하는 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양도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만 원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저작물을 이용한 영상화 기간은 5년의 제약을 받는다.

또한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자는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이 원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영상화와 무관하게 저작권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유형으로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저작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이 있다.

이들은 일신전속권이고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며, 이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무기한이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 유지와 보호가 가능하다.

1) 저작자임을 인정받을 권리와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가명, 필명 등을 표시하거나 저작자를 무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제1265조).

2)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수정, 축약, 추가되는 것을 금지하여 자신의 명예와 평판,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다(제1266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사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게 된 자라도 저작자가 생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변형할 수 없다. 저작자의 이해관계인은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예외로 러시아 민법 제1274조 제4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문학, 음악, 캐리커처 등의 방식으로 풍자적으로 비틀어 이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가능하다.

3) 공표권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개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저작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때에만 배타적 권리자의 공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저작자 사후에도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다. 기타 특수한 권리

1) 철회권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실제로 공표되기 전까지 자신의 공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제1269조). 단, 이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양수 받거나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있다면 저작물의 공표 철회로 인해 이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업무상 저작물은 철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접근권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원 작품을 소유한 자에게 저작물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도 원저작물의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92조).

3) 추급권

미술저작물의 원본, 어문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의 원본을 저작자가 양도하거나 판매한 후라도, 이러한 저작물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자는 재판매 가격의 일정한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93조). 2018년 6월부터 저작물을 재판매할 때 판매자가 보수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저작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저작인접권

가. 러시아 저작인접권 제도

러시아는 민법 제71장을 통해 실연가, 음반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출판가 등의 지적 활동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2017년에는 러시아 민법 개정을 통해 연출가가 제작한 연극도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연극을 인식하게 하면서 반복 공연이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면 저작인접권을 보호받게 되었다.

나.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

기술적 수단에 의해 복제나 배포가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된 실연, 소리나 음을 녹음한 것으로서 시청각 저작물에 수록된 것을 제외한 음반, 방송 사업장 의한 방송 전달, 데이터베이스는 러시아 민법 제1304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단, 이들을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다. 저작인접권의 보호 주체와 내용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도 실연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 기타 권리로 구성된다. 이 중 인격권은 실연가와 연출가에게만 인정된다.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출판자는 기타 권리로서 저작물 사본에 성명과 상호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과 달리 저작인접권은 법인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양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권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권리 보호 주체별로 저작인접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연가의 권리

지적 활동을 통하여 노래, 연주, 연출, 무용 등의 실연을 창작한 실연가는 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실연의 창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15조).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는 실연의 이용으로 간주된다.

-
-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의한 방송, 유선에 의한 실연 전달
 - 공중이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연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실연의 수록 및 매체 고정
 - 수록된 실연의 공중 재생
 - 실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또는 수개의 유형적 복제물로 작성
 - 실연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양도, 배포, 대여하는 것

한편, 실연가의 동의하에 수록된 실연을 복제, 방송, 유선 전송, 공중 재생하는 행위에는 실연에 대한 배타권이 미치지 않는다(제1317조 제3항). 단 이 경우 실연의 이용 행위는 수록 당시에 실연가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 음반 제작자의 권리

음반이란 실연이나 기타 표현에 의한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서 시청각 저작물에 포함된 녹음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음반 제작자는 소리를 최초로 고정하여 음반을 제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음반 제작자에게도 음반에 대한 배타권과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인정되며 음반 이용과정에서의 손해로부터 음반을 보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역시 음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는 음반의 이용으로 간주된다.

- 음반의 공공 실연
- 유선과 무선에 의한 음반 전달
-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 음반의 복제와 가공
- 음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양도, 배포, 대여하는 행위
- 음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한편 음반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 음반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거나 유무선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자나 실연의 배타적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아도 가능하다. 대신 음반과 실연의 배타적 권리자는 음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다(제1326조).

3) 방송사업자의 권리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저작권접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고 방송을 유무선으로 전달하는 법인인 방송사업자가 방송에 대한 권리자가 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송신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 열거된 예시는 방송을 송신, 전달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수록
- 방송 수록물의 복제
- 방송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처분, 배포, 대여하는 행위
- 방송의 재송신
- 방송을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방송의 공공 실연

4)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를 수집하고 배열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구성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실제로 조정 작업을 한 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해 상당한 금전과 인력, 물질적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할 배타적 권리,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의 형식과 구조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저작권접권의 보호 대상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러시아 저작권법 제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대상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제134조 제3항).

5) 출판자의 권리

공표되지 않았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유에 속하는 저작물의 출판은 저작권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을 공표한 출판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와 출판자의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3조, 제139조).

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은 실연가의 생존기간뿐만 아니라 실연이 행해지거나 수록된 해의 다음 해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음반에 대한 권리는 수록된 다음 해로부터, 공표된 음반일 경우 공표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보호받는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권리는 방송 전달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완료된 다음 해로부터 15년간 존속한다. 출판자의 권리는 출판 다음 해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

저작인접권 중 비재산적 인격권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권리 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망 후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공동저작자 중 가장 나중에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그의 사망 후 다음 해로부터 70년까지 보호된다(제1281조 제1항).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저작자 사후 70년 이내에 공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표된 다음 해로부터 70년이다(제1281조 제3항). 무명 또는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물이 공표된 다음해로부터 70년간 보호되나,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저작자를 특정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저작자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된다(제1281조 제2항).

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 관련 특수한 내용으로 제1281조 제4항과 제5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자가 탄압을 받았다가 사후에 명예가 회복될 시에는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명예가 회복된 다음 해로부터 기산하며, 만약 저작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소전쟁에 참여하였다면 그 시기에 근무한 권리자의 보호기간은 4년 동안 연장하게 된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영구적으로 보호되며 저작인격권 포기는 무효로 된다(제1265조 제1항).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러시아 민법은 저작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제한 사유와 공정이용 사유를 두고 있다.

우선 러시아 민법 제1274조에서는 정보, 교육, 문화 목적의 저작물 무상이용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저작자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학술, 논문, 평론, 교육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
- 교육적 성질의 간행물, 방송,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시사에 대한 기사 방송과 전달 및 정기간행물의 복제와 배포, 단, 저작물의 복제, 전달이 특별히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 정치적 발언, 연설 등의 저작물을 공중에 고지할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간행물에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사건 과정에서 보이는 저작물을 고지할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방송, 논평하는 행위
- 교육기관, 의료조직, 사회기관 등의 그 구성원이나 대상자를 위한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
- 논문 요약을 컴퓨터 기억장치에 수록하는 것과 공중 전달을 포함하는 전자매체에의 수록

위 사유 외에도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사본을 비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것은 저작자의 명칭 표시를 조건으로 하여 가능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수화 번역하거나 청각적 설명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제1274조 제2항과 제3항).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문학, 음악, 풍자, 캐리커처, 기타 표현을 통해 풍자적으로 비틀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할 수 있다(제1274조 제4항).

위 제1274조 외에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무상이용(제1275조), 공공장소에 상시 설치된 저작물의 무상이용(제1276조), 적법하게 공표된 음악 저작물의 무상의 공공 실연(제1277조), 법 집행 목적을 위한 무상의 복제(제1278조), 방송사업자에 의한 저작물 단기 이용을 위한 무상의 녹음과 녹화(제1279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제1280조) 조항을 통해서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1. 저작권 등록기관
2.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절차
3. 일반 저작물 등록비용

러시아에서는 저작권의 발생과 행사를 위해 저작물 등록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제1259조 제4항).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자의 재량에 따라 등록 가능하다(제1262조).

저작권자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통해 저작물 소유관계와 관련 정보를 증명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기관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러시아 지적재산당국(ROSPATENT)이다. 위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별도의 증명 없이 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262조 제7항).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양도할 시에는 그 양도 사실도 등록해야 한다.

기타 저작물의 등록은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민간기업과 단체는 개별적으로 저작권 등록부를 운영·관리하며 대표적인 등록 서비스로는 에스프로 서비스 업체인 “National Reg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운영하는 n’Ris²⁾,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idPowers”에서 운영하는 iReg³⁾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 법무법인이 자체적으로 저작권 등록부를 두고 있기도 하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절차

ROSPATENT를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신청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등록신청은 한 번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저작물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제1262조 제2항).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국가 등록 신청

2) <https://nris.ru/>

3) <https://idpowers.com/cases/ireg/>

- 저작물의 권리 소유자와 저작자(저작자가 지명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표시, 각각의 주소 또는 소재지
- 등록 대상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특정 자료

ROSPATENT는 등록 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저작물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물을 국가 등록부에 기재한다. 또한 등록신청인에게는 저작물 국가등록증을 발급하며, ROSPATENT의 공식 게시판을 통해 저작물 등록을 공표한다. 저작물 등록 과정에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

일반저작물 등록비용⁴⁾

	등록비용	법무법인 대행비용
어문 저작물(1개월 소요)	5면 미만 - 1,298 루블 6~10면 - 2,360 루블 11~50면 - 2,714 루블 51~100면 - 3,363 루블 101~200면 - 4,366 루블 201~500면 - 4,484 루블 500면 이상 - 4,602 루블	15,000 루블
음악 저작물(1개월 소요)	1,534 루블	15,000 루블
긴급 등록(3일 소요)	2,124 루블(추가비용)	5,000 루블
영문 등록증 추가 등록	2,950 루블	2,500 루블
등록증 추가 발급	826 루블	2,500 루블
등록증 및 등록부에 보관되어 있는 저작물 인쇄본(10면 이상)의 인증사본 발행	590 루블	2,500 루블
등록증 발송	우편요금에 따름	1,500 루블

4) RAO 등록 기준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의 양도
2.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

지적 활동에 따른 성과물의 권리자는 성과물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를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다(제1233조 제1항). 양도가 배타적 권리의 전 범위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으로 간주된다(제2항).

저작권의 양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양도계약이 무효로 된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이전은 러시아 민법 제123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 등록을 받아야 한다(제1234조 제2항).

계약을 통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양도는 유상으로 간주되며, 대가 지급 방식은 1회의 정액 지급이나 정기급 지급, 양수인 수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이용허락 (라이선스)계약

양도계약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도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을 시 계약이 무효로 되며(제1235조 제2항),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허락 계약에는 ① 계약을 통해 이용될 대상과 이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증명할 서류, ② 지적 활동의 성과를 이용할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235조 제6항). 또한 계약을 통해 저작권이 이용되는 영역과 이용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용 영역은 러시아 전 영역 내로, 이용 기간은 5년으로 각각 추정된다(제1235조 제3항 및 제5항).

한편 과학, 어문, 예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용허락 조건을 미리 공개하고, 이용자가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라이선스가 가능하다(제1286.1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픈 라이선스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은 배타적 권리가 유효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기간은 5년으로 간주된다. 이용 영역 역시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러시아 전 영토 내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1. 저작권 침해
2. 민사소송
3. 형사소송
4. 행정적 구제조치
5. 국경조치(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6.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7.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경고장 발송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2017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시장의 공정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된다.

2014년 러시아 국내에서 연방 지방 중재 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제소된 민사소송 건수는 10,109건이었으며 이 중 저작권 침해가 5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9년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형사범죄가 522건 적발되었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범죄도 20만 건 넘게 적발되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해하는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적 대응조치, 국경조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민사상 구제조치의 유형으로는 예비적 조치, 금지명령, 손해배상, 물품의 압수와 파괴 등 기타 조치가 있으며 주로 저작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자의 금전적 보상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1) 예비적 조치

법원은 저작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저작권 침해 제품을 압류하는 등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2) 금지명령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물품의 제작, 복제, 판매, 대여 수입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제1252조). 법원은 인터넷상 저작물의 위법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인터넷상 저작물 접근을 제한하는 취지의 금지명령을 할 수도 있다.

3) 손해배상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법정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1252조 제1항 및 제3항).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거나 이미 지출한 비용, 권리자의 재산상 손해, 통상적인 업무 조건 하에서 권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이 손해로 추정된다. 손해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나, 입증이 어려운 때에는 법정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단, 보상금 청구는 손해배상과는 택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손해액 증명 용이성과 증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4) 기타 구제 조치

위 수단 외에, 저작권자는 자신이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사실을 인정받거나, 저작물의 부정본을 압수하거나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장치와 재료를 압수 및 파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관할 법원과 소송의 흐름

민사상 구제 조치와 관련한 러시아 법원은 크게 보통법원과 상사 법원(Commercial Courts)⁵⁾으로 구분된다. 보통법원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나 영리기업이 아닌 사안을 다루고, 상사 법원은 영리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간의 사건을 심리한다. 각 법원의 심급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3년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재산 법원이 설치되어 상사 법원에 포함되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콘텐츠 접속제한·차단을 신청하는 가처분 사건은 모스크바 시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5) 러시아어로는 'Arbitrazh'로 '중재법원'이라는 뜻이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상사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 기타 유의사항

민사소송 제기는 저작자 또는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자만이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저작물 원본이나 사본, 외국 저작권 기관에서의 저작물 등록 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직접 구입한 저작권 침해 제품 사본과 영수증, 저작권 침해품이 판매되는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① 저작물을 표절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자(저작인격권 침해)와 ②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대상을 큰 규모(10만 루블 상당)로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모방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취득, 보관 또는 수송한 자(저작재산권 침해)는 러시아 형법 제1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1) 표절행위(형법 제146조 제1항)

- 2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18개월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6개월 이하의 금고

2) 저작물의 불법이용(형법 제146조 제2항)

- 2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18개월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한 저작물 불법이용이 ①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② 규모가 100만 루블 이상이거나, ③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아래에 열거된 형벌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된다(형법 제146조 제3항).

- 5년 이하의 의무노동형

- 6년 이하의 금고

- 5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3년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 모방품을 몰수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저작물 복제에 사용된 서버나 컴퓨터 장치, 모방품의 재료나 제작 기계, 모방품으로 얻은 수익과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

나. 수사 및 기소 절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자,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자, 그리고 형사 고소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통상 이용권자이다. 고소는 러시아 경찰 당국과 경찰 사무소, 연방 세관, 지적재산권국을 통해 할 수 있다. 러시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직권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 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적재산권 확인을 위한 증거와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증거, 침해 발생 장소, 침해자의 명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와 증거수집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 형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 경찰 조직 내에는 아직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특수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한 사건은 모두 일반 경제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루게 된다.

다. 형사소송 절차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형사 법원도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건은 모두 보통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형사소송 시 침해품 적발부터 제1심 판결까지의 평균 기간은 최단 6개월 (재범이거나 손해가 중대한 경우), 최장 1년(조직범죄 시)이 걸린다. 사건 배경과 피고의 대응,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변호사 비용은 선임하는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2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행정적 구제조치

러시아 행정 법규 위반법 (CAO) 제7.1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모방품과 음반 수입, 판매, 대여, 위법한 사용과 저작물의 제조자, 제조지,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한다.

- 일반인 : 1,500~2,000 루블
- 공무원 : 10,000~20,000 루블
- 법인 : 30,000~40,000 루블

모방품이나 음반 및 이들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와 설비, 기구 등에 대한 압수와 파괴 등도 가능하다. 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의 법령과 국제조약에 따른 제재를 받으며, 같은 법 제32.9조와 제32.10조에 따라 러시아에서 추방될 수 있다.

행정적 구제수단을 사용할 시, 대부분의 절차와 작업은 세관과 경찰 등의 행정기관이 진행하므로 권리자가 부담할 비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한편 저작권침해를 발견한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행정적 구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경찰과 세관 등은 행정조치를 내릴 최종적 결정권한은 없고 단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 시에는 위 행정기관이 원고가 되고 권리자는 제3자가 된다.

국경조치 (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가. 세관을 통한 구제 조치 개요

저작권자는 러시아 세관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러시아 국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물품 수입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러시아 세관국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품은 1,930만 점이었고 이 중 행정 법규 위반법 제7.12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27건이었다고 한다.

나. 세관 저작권 등록 시스템

저작권자와 그 대리인은 러시아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자료들을 첨부해야 한다.

- 위임장
- 공증을 받은 상업등기부 또는 회사의 정관
- 공증을 받은 손실보상 보증서
- 저작권 확인 서류 (등록 증명서 등)
- 세관등록을 요청하는 물품, 작품의 정확한 목록
-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락 계약서 사본 또는 양도증서 사본
- 저작물의 소유권과 작성일 확인 서류
- 정품과 모방품의 세관 수속 장소
- 정품과 모방품의 주요 특징, 사진, 샘플
- 러시아 시장 내에 모방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정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보통 3~4개월의 기간을 거쳐 저작권이 등록되며,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세관이 정기적으로 압수된 수입품을 통지하고 모방품의 수입자와 사용자 정보, 권리 침해 사항을 전달하므로 권리자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가. Information Law에 따른 조치

1) 관련 법령

2013년 러시아 연방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법 No.187-FZ ("On Amendments to Certain Law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소위 Anti-Piracy Law)를 채택하였다.

이 법을 통해 영화, TV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 불법 복제가 발생하는 웹사이트 또는 도메인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예비적 보호 조치(금지) 명령을 받아 정부기관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 또는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15년, Anti-Piracy Law로 얻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러시아 연방정부는 Anti-Piracy Law를 연방법 No.149-FZ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Data Protection, 이하 Information Law)로 통합 개정하였다. 이 법은 영화, TV 영상 저작물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법률의 범위를 사진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법원의 예비적 보호 조치 명령을 받기 전에 웹사이트 또는 도메인 운영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소송 외 절차를 법제화 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반복하여 받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구제 조치

• 예비금지명령

지적재산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44.1조에 따라 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영장을 받은 후 이를 러시아 연방 통신·정보기술·언론 감독국(Roskomnadzor)에 송부한다. 이후 저작권 침해 차단 이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 (i) 저작권자는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을 Roskomnadzor에 발송하며, 관련 정보를 통해 Roskomnadzor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등록한다.
- (ii) Roskomnadzor은 저작권자의 정보 수령 후 3 영업일 이내에, 웹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지하는 호스팅 프로바이더 및 기타 개인을 특정하여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송부하며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 (iii) 호스팅 프로바이더 등은 경고장을 수령한 1 영업일 이내에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웹 사이트 소유자는 1 영업일 이내에 해당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여야 한다.
- (iv) 만약 웹 사이트 소유자가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 콘텐츠의 복제, 사용 및 배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호스팅 프로바이더 등)는 3 영업일 이내에 콘텐츠 접근 제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웹 사이트 소유자가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시 Roskomnadzor은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ISP에게 전달하고 ISP가 24시간 동안 해당 웹 사이트 또는 웹 사이트의 섹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

• 영구적 금지조치

정부기관(Roskomnadzor)은 반복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웹사이트 등을 영구적 차단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다. 동일한 신청인으로부터 접속 차단 신청을 받을 시 침해가 반복되었다고 간주되며, 2017년 기준으로 223건의 웹사이트가 영구 금지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3) 담당기관과 관할

인터넷상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은 모스크바시 법원이므로,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을 발견한 권리자는 위 법원을 통해 앞서 살핀 예비 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금지 신청 시, 인터넷상 저작물이 사용됨과 신청인이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자 문서 방식으로 가능하다.

한편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인(Roskomnadzor)이므로, 권리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통해 위 기관에 사이트 차단 등을 신청해야 한다.

4) 정보 중개자(호스팅 프로바이더)의 책임

인터넷상 정보 중개자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호스팅 프로바이더, 웹사이트 소유자 역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민법 제1253.1조 제2항에서, 호스팅 프로바이더와 웹사이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253.1조 제3항에서 각각 면책 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시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 (i)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지식 재산권 사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 (ii) 권리자로부터 해당 콘텐츠가 업로드된 웹 페이지 또는 IP 주소를 명시한 지식 재산권 침해 경고장 수령 이후, 문제 된 지식 재산권 침해를 정지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치를 취함.

나. 2017년 연방법 No.156-FZ (Law on Mirrors)에 따른 조치

1) 관련 법령

2017년 연방법 No.156-FZ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소위 "Law on Mirrors")는 저작물 침해에 따른 웹 사이트의 차단 이후, 우회 도메인을 통한 소위, 미러링 웹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제재를 위하여 "차단된 웹 사이트의 복제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 따라, 미러링 사이트는 검색 엔진을 통한 노출이 금지되며, 저작권 침해의 웹 사이트 접근 제한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 발견된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은 추가적인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없이 아래와 같이 단순화된 차단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 Law on Mirrors에 따른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 프로세스

Law on Mirrors에 따른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⁶⁾

- (i) 법원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결정 이후, 저작권자는 차단된 웹 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The Ministry of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Minsvyaz)에 제공함.
- (ii) 관련 정보를 받은 Minsvyaz는 24시간 이내에 차단된 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의 확인 여부를 거쳐, 미러링 사이트의 소유자에게 러시아어 및 영어로 된 전자 문서 형태의 차단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하며, 추가적으로 Roskomnadzor에 차단 결정에 대한 상호작용을 위한 통지를 발송함.
- (iii) Roskomnadzor는 Minsvyaz의 통지를 수령한 이후 24시간 이내 미러링 사이트의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이를 제공한 자를 특정한 이후 러시아어 및 영어로 된 전자 문서 형태로 Minsvyaz의 통지 사항을 전달함.
- (iv) Roskomnadzor는 미러링 사이트의 차단 조치 이행을 위하여 통신 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함. Roskomnadzor의 통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미러링 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함.
- (v) Roskomnadzor는 러시아 연방지역 내의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미러링 사이트의 도메인 명과 URL을 통보하여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을 중단하라는 전자 문서 형태의 통지를 진행함. Roskomnadzor의 통지를 받은 검색 엔진 운영자는 24시간 이내에 미러링 사이트의 도메인 및 URL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하여야 함.

다. 2020년 연방법 177-FZ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1)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물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177-FZ 개정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이하, 연방법 177-FZ 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4)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위 개정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 fast-track 대상에 웹사이트 외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개념을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2)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 침해 차단 프로세스

연방법 177-FZ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침해 방지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i)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통한 저작물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지식 재산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Roskomnadzor에 접근할 수 있으며, 러시아 내의 특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의 제한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음.
- (ii)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Roskomnadzor은 3 영업일 이내에 러시아어와 영문의 전자 문서 형태로 정보 리소스 소유자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 게시를 제공하는 자 (another person, who provides publication of the corresponding software application on the Internet) (이하, e-플랫폼)에게 통지하여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함.
- (iii) 요청을 받은 이후 1일 내에 e-플랫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소유자 (mobile application owner)에게 침해 저작물의 액세스 제한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함.
- (i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소유자는 1인 이내에 해당 공지에 대응하여야 하며,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v) 만약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유자가 접근 제한에 실패하거나 혹은 거부를 하는 경우 e-플랫폼은 3일 동안 침해 저작물이 유포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vi) e-플랫폼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유자가 행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Roskomndazor은 통신 사업자 (telecoms operator)을 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차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신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경고장 발송

가.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계약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다수의 중재기관이 몇 년 전부터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중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조정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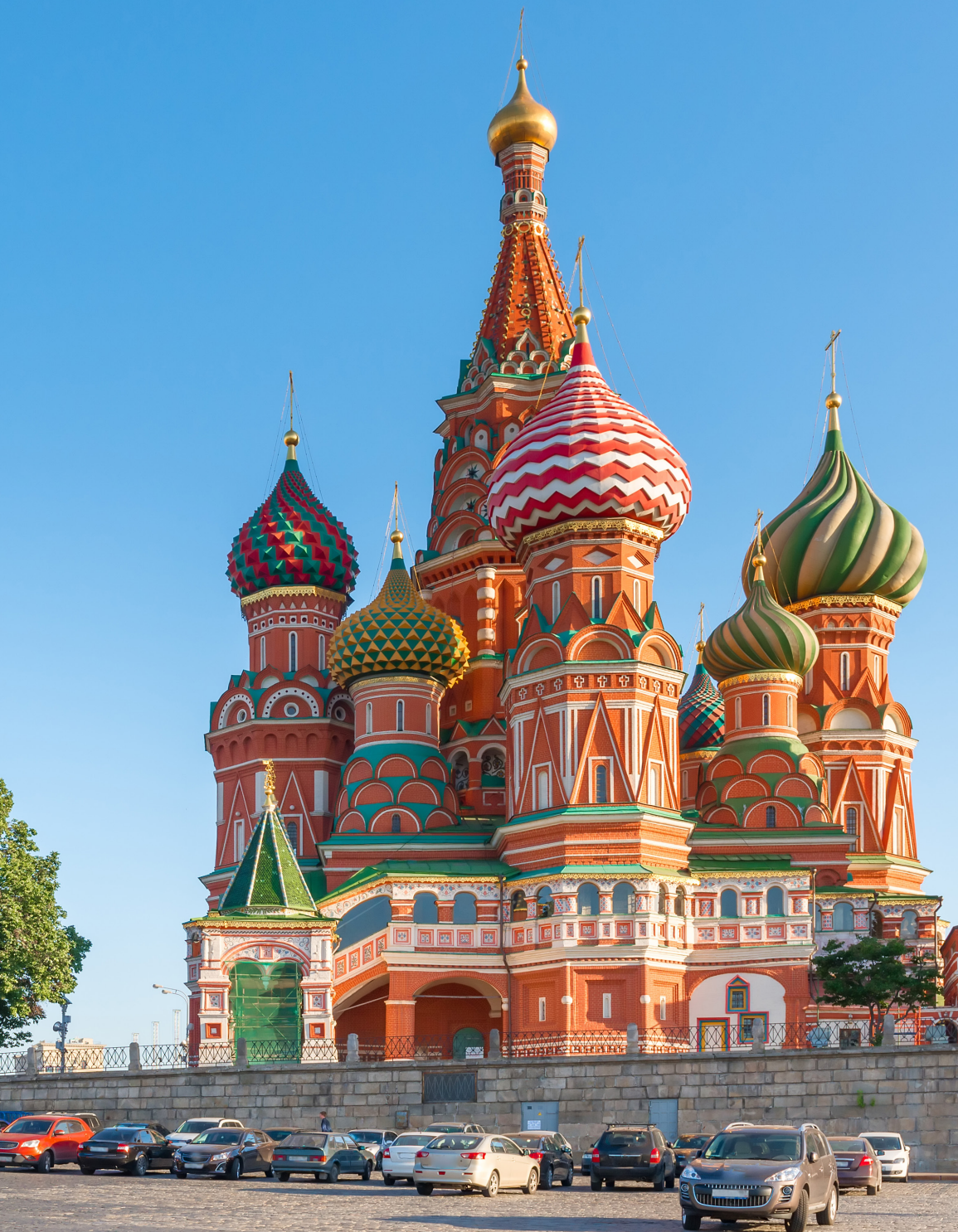
나.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송부는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수신자의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임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된다.

경고장 송부 시 지켜야 할 형식이나 요건, 발송 방식은 없다. 다만 경고장의 취지 상 보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권리자와 지적재산권 특정
-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그 침해 정도
- 침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중단 제안 및 이후 대응 조치 등 통지

경고장은 비용 등이 크게 들지 않으므로 다른 구제수단과 비교했을 때 소규모 침해에 대응하기 적절한 수단이다.



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2. 민간단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가. 연방 문화성

연방문화성은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하고,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를 승인하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연방 문화성 산하의 규제부서(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департамент)는 연방 문화성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문화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법률 개선, 법적 규제 품질 제고, 저작권과 저작권접권 분야의 국가정책과 법적 규제 개발, 이행,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⁷⁾

나. 연방 세관청

러시아 세관은 러시아 국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단속하고, 저작권 관련 정보를 세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시, 세관은 일시적으로 물품을 압수하거나 소송을 거쳐 물품을 몰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 연방 내무성

연방 내무성에 러시아 경찰기관이 속하며, 러시아 경찰이 러시아 시장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라. Roskomnadzor(로스콤나조르)

Roskomnadzor(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in the Sphere of Telecom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Mass Communications 약어; Роскомнадзор/Roskomnadzor)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국가 집행 기관으로서 등록 관리, 웹 사이트, 웹 호스팅 회사, 법원 및 기타 기관이 모두 연계되어 웹 사이트 차단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7) https://culture.gov.ru/about/departments/normativno_pravovoy_departament/

Roskomnadzor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인터넷 모니터링과 콘텐츠 필터링은 불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사진저작물 제외)와 관련하여 Roskomnadzor는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저작권자의 신청에 따라 웹사이트 등의 차단을 이행할 수 있다.

기타 Roskomnadzor의 권한과 역할 중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 있는 항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⁸⁾

- 러시아의 전기통신 및 공공통신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법률과 연결규칙, 네트워크 설계와 운용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정보기술 관리 및 개인 정보 처리 관련 법률 준수 여부도 감독한다.
-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준수 관리 감독
- 시청각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녹음물의 복제 시의 러시아 법률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단,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러시아 내에서 배포가 금지되는 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식별을 위한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 로케이터 등의 통합 등록시스템 제작과 유지
- 공공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등록부,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 통합 등록부, 라이선스 등록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의 등록부 보관
- 라이선서 기관에 대한 라이선시의 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 제출 절차,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의 라이선스 등록부 작성과 유지 절차 및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통신 절차 마련
- 대중매체와 공공통신 또는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등록
- 외국의 정기 간행물의 러시아 내 배포를 위한 허가서 발급
- 외국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 수행
- 러시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고 위반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 및 제한조치 실시
- 정부 기준에 따른 통합 등록기관 설립 및 통합등록부 작성과 보관

8) <http://eng.rkn.gov.ru/about/>

마. 러시아 지적재산권국(ROSPATENT)

러시아 지적재산권국은 러시아 경제발전성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대한 절차 규정, 지적재산권 감독과 등록증의 발행, 라이선스 계약 및 양도계약 등록과 정보 공개 등의 기능을 한다. 또한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사무를 처리한다.

민간단체

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한다.

주요 집중관리단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Russian Organis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VOIS, 인증기관) : 실연가, 연출가
- Russian Authors' Society(RAO, 인증기관) : 작곡가, 작가
- Russian Union of Rights Holders(RSP, 인증기관) : 작가, 실연가, 음반제작자, 미술 및 예술저작물 등
- Association of Right owner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Rights in the Sphere of Visual Arts(UPRAVIS, 인증기관) : 화가, 조각가 등 예술가(재판매권 관련), 사진 및 응용미술저작물 등

나. 일반 민간조직

다음은 불법복제 등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들이 조직하거나, 저작권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조직의 일부이다.

-
- Information & Computer Technologies Industry Association
목적 중 모방품 대책활동이 있으며, 지적재산을 담당하는 부문이 있다.
삼성, 파나소닉,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지부 등이 구성원이다.
 - Nonprofit Partnership of Software Suppliers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지부가 구성원이다.
 - National Federation of the Music Industry
소니, 워너, 유니버설 등 국제적 미디어 업체들의 러시아 지부가 구성원이다.



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⁹⁾

48

GORODISSKY & PARTNERS

러시아에서 가장 큰 IP 전문 로펌이며, 유럽에서도 IP 전문 로펌 중 10위권 내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대하여 소송, 중재, 고소, 조사, FTO 분석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M&A, 번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소 | 129090, Moscow B. Spasskaya Str., 25, stroenie 3 Russia

분사무소 | St. Petersburg, Ekaterinburg, Krasnodar, Samara, Perm, Dubna, Kazan, N. Novgorod, Vladivostok, Novosibirsk, Tekhnopark "Sarov", Kiev

Phone | +7 495 937 6116

연락처 | +7 495 937-6116, +7 495 937-6109

홈페이지 | www.gorodissky.com

Email | pat@gorodissky.com

변호사 수 | 130 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 Evgeny Alexandrov, Ilya Goryachev, Elena Beloshuk 등

ZAO INEUREKA

2001년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 | INEUREKA 125009 Moscow, Strastnoy Boulevard, 4, building 1, office 100

연락처 | +7 495 369-10-36, +8 800 350-31-65

홈페이지 | www.ineureka.ru

Email | org@ineureka.ru

저작권 전문 변호사 | Fariza Gabolaeva

Gowling WLG

9개국 19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로펌 그룹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1991년부터 사무소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 11 Gogolevsky Boulevard, Moscow, 119019, Russia

연락처 | +7 495 775-4863

홈페이지 | www.gowlingwlg.com

변호사 수 | 11 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eronica Fridman

Baker McKenzie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계 다국적 로펌으로 47개국 77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초대형 로펌이다.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소 | White Gardens, 9 Lesnaya Street, Moscow 125196, Russia

분사무소 | St. Petersburg

연락처 | +7 495 775-4863

홈페이지 | www.gorodissky.com

Email | moscow@bakermckenzie.com

변호사 수 | 81 명(모스크바 사무소)

저작권 전문 변호사 | Eugene Arievich, Margarita Divina, Pavel Gorokhov 등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 온라인 상 권리침해에 대한 콘텐츠 차단과 관련된 집행절차 협조업무 수행

Hogan Lovells

런던과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영미계 다국적 로펌으로 영국, 미국 외 12개 국가에 약 40여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소 | Summit Business Centre, 22 Tverskaya Street, 9th Floor, Moscow 125009, Russia

연락처 | +7 495 933-3000

홈페이지 | www.hoganlovells.com/en/locations/moscow

변호사 수 | 29 명(모스크바 사무소)

저작권 전문 변호사 | Natalia Gulyaeva, Julia Gurieva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 ① 레고 그룹을 대리하여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내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

② 글로벌 게임 기업인 Novomatic을 대리하여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정책 및 침해종단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사건 업무를 수행

9) 사무소 개관 및 저작권 관련 사건 수행 정보는 해당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2021. 2. 기준).

Dentons

2015년 미국 로펌 덴튼스와 중국의 다정 법률사무소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초대형 로펌으로 한국의 Dentons Lee 법률사무소가 업무 제휴 관계에 있다.

주소 |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Lesnaya ulitsa. 7, Moscow, 125196, Russia

분사무소 | St. Petersburg, Krasnodar

연락처 | +7 495 644-0500 홈페이지 | www.dentons.com/en/global-presence/russia-and-cis

변호사 수 | 48 명(모스크바 사무소), 30 명(St. Petersburg 사무소)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ictor Naumov, Denis Voevodin 등

Egorov Puginsky Afanasiev & Partners

1993년 설립된 종합 법률사무소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 이상의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소 | 21, 1st Tverskaya-Yamskaya Str., Moscow, 125047, Russia

분사무소 | St. Petersburg

연락처 | +7 495 935-8010 홈페이지 | epam.ru/en/team Email | mow_office@epam.ru

변호사 수 | 41 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avel Sadovsky, Irina Kosovskaya, Igor Serebryakov, Daria Sergeeva 등

INTELS

1980년대말 구 소련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적재산권 전문 민간기관으로, 현재는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 33, Pokrovka Str. 105062, Moscow, Russia

연락처 | +7 495 921-40-81 홈페이지 | intels.ru Email | agency@intels.ru

변호사 수 | 14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 Jennet Abduraimova

Liapunov and Partners

1994년 설립된 IP전문 부티크 로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립국가연합(CIS), 발틱국가들의 법률사무소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소 | off. 25, Zagorodny pr. 16, St.Petersburg, 91002, Russia

분사무소 | Moscow, Kiev

연락처 | +7 812 312-8421 홈페이지 | www.liapunov.com Email | mail@liapunov.com

변호사 수 | 1 - 23 명(St. Petersburg 사무소)

저작권 전문 변호사 | Anna Eznicenko, Alexey Grishaev, Daria Pettus, Elena Shevchenko, Inna Galaka, Daria Sergeeva 등

Sojuz patent

1922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어 변리업무를 전담하였던 'Sojuzpatent'가 모체로, 구 소련 붕괴 후 유한회사로 전환되었다.

주소 | 13 Bldg. 5 Myasnitskaya St., 101000 Moscow, Russia

연락처 | +7 495 221-8881, +7 495 221-8880 홈페이지 | www.sojuzpatent.com Email | info@sojuzpatent.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vetlana B. Felitsyna, Maxim V. Mikhailov, Elena F. Halturina, Tatiana V. Ekhlash, Mikhail V. Nepomnyashchikh, Victoria M. Nikitina, Maria A. Plotkina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 미국의 하스브로 사를 대리하여, 'My Little Pony'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의 불법복제품을 수입한 자들에 대한 세관조제(압류) 및 행정소송(벌금 및 몰수)업무를 수행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¹⁰⁾

- 침해통지서 작성
 - ① 도메인 네임 소유자 : 1,000 USD
 - ② 웹사이트 소유자 : 800 USD
 - ③ ISP : 600 USD
 - ④ 도메인 등록업체 : 600 USD
- 경고장 작성 : 1,000~1,500 USD
- 민사 본안소송(1심) : 15,000~20,000 USD
- 민사 가처분(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에 대한 금지명령 신청 포함) : 5,000 USD
- 형사사건(권리자 측)
 - ① 수사단계 참여 : 4,000~7,000 USD
 - ② 소송단계 참여 : 5,000~7,000 USD
- 행정소송 : 5,000~7,000 USD
- 세관의 저작권 등록 : 1,700 USD(이후 1개 추가될 때마다 1,000 USD)
- 세관집행 과정에 참여 : 700~1,500 USD

10) 현지 법률사무소 중 일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실재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 지적재산법원 판결, 사건번호 A40-182072/2017호, 2019.11.27.

미술저작물인 완구 Homunculus Loxdontus (Zhdun)에 대한 원고의 배타적 권리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 피고는 위 완구를 인터넷과 소매점에서 판매하였다.

지적재산법원은 인터넷에서의 모방제품 선전 및 판매와, 동일한 모방품의 오프라인상 판매는 각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진 별개의 행위이므로 독립하여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각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Autodesk Inc(미국 기업), Altium Limited(호주 기업) vs. Reltec LLC(러시아 기업),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상사법원, 사건번호 A60-25829/2014

원고는 미국 기업인 Autodesk Inc와 호주 기업 Altium Limited로, 러시아 기업 Reltec LLC를 피고로 하여 2014년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약 2년에 걸쳐 4심까지 진행된 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기록 및 보존한 자였다. 법원은 원고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의 복제품을 컴퓨터에 보존한 피고의 행위의 위법한 목적을 인정하여 고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 사례 - 2015년 A Serial LLC vs. Privactully LLC, Yes Networks Unlimited Ltd., Sia Vps Hosting, Iliad (모스크바 시 법원, 사건번호 3-0330/2015)

본 사건의 청구인은 텔레비전 시리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러시아 기업으로, 청구인은 도메인 명 org.net.tv.me에 해당 텔레비전 시리즈가 배포 및 이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웹 사이트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금지명령 청구를 인용하였고, Roskomnadzor는 이를 근거로 하여 콘텐츠의 차단에 대한 실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본안 소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호스팅 프로바이더는 원고(가처분 사건 청구인) 텔레비전 시리즈의 불법 복제물을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9.05. 2015 г. N 84-КГ15-1¹¹⁾

원고(Бойцова А В)는 컨트리하우스와 욕조 등에 대한 카탈로그와 설계도의 저작자로서, 피고(Колосову С А)가 피고의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위 카탈로그가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문제된 바, 러시아 대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적재산 활동의 결과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인지와 그 결과물이 지적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결과물이 저작자의 창작적 결과물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21.05.2019 on case N 309-ЭС18-25988, А60-27474/2018¹²⁾

원고(Гелио Пресс)는 사진저작물의 원 저작자로부터 7개의 사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자이다. 원고는 위 사진저작물을 개변하고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를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피고(Пассвет жизн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저작권 정보를 삭제한 피고에 대해 저작물의 창작자 뿐만 아니라 그 후속 권리자(the subsequent right holder)도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러시아 대법원은 후속 권리자 역시 저작권 정보 삭제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1) Nikitin Law International - Определения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мая 2015 г. N 84-КГ15-1, от 26 мая 2015 г. N 84-КГ15-4, 2020 <<http://ncglaw.ru/index.php/en/node/108>>. 최종방문일 2021.2.21

12) Журнал «Юрист компании» - Обзор практики Экономколлегии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за май 2019 года (кроме банкротных споров), 2019 <https://www.law.ru/blog/21590-obzor-praktiki-ekonomkollegii-verhovnogo-suda-rf-za-may-2019-goda-za-isklyucheniem>), 최종방문일 2021.2.21.

ЗАКОНЫ, КОДЕКСЫ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Определение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пор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от 21.05.2019 по делу N 309-ЭС18-25988, А60-27474/2018, 2019 <https://legalacts.ru/sud/opredelenie-sudebnoi-kollegii-po-ekonomicheskim-sporam-verhovnogo-suda-rf-ot-21052019-po-delu-n-309-es18-25988-a60-274742018/>), 최종방문일 2021.2.21.

- 1) 러시아 민법 제1233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법률과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가능하다.
- 2) 만약 계약상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그러한 내용의 계약은 독점적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며, 이용허락 계약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 3) 저작권 정보(저작물, 창작자와 기타 권리자를 특정하고 저작물 이용 조건을 담은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및 저작권 정보가 제거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각각 독자적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저작권 정보가 삭제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단, 침해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정보를 삭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8.11.2014 N 85-К Г 14-8¹³⁾

원고(К л а с с и к П а р т н е)는 계약을 통해 작곡가와 실연가로부터 6 건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한을 취득한 자이다. 계약에 따르면 원고만이 음악저작물 6 건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피고(А н и ш к и н у В В)는 위 음악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음반을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6 개의 음악저작물 각각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6개의 음악저작물을 기준으로 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은 6 건의 음악저작물은 하나의 음반에 의해 침해된 것이므로 1 개의 음반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불법 배포된 음반에 포함된 각 음악저작물(노래)은 각자가 독점적 권리의 객체가 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배상액을 청구할 시 배상액은 하나의 음반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음악저작물마다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3) Договор-Юрист.Ру - Дело № 85-КГ 14-8, 2014

(https://dogovor-urist.ru/%D1%81%D1%83%D0%B4%D0%B5%D0%B1%D0%BD%D0%B0%D1%8F_%D0%BF%D1%80%D0%B0%D0%BA%D1%82%D0%B8%D0%BA%D0%B0/%D0%B4%D0%B5%D0%BB%D0%BE/85-%D0%BA%D0%B314-8/) , 최종방문일 2021.2.21.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09.04. 2013 г. N 5-KГ13-2¹⁴⁾

원고(Г л у х о в М.Ю.)는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in the financial engineering system”과 “Russian market of structured products”라는 논문의 저자이다. 피고(Ш л я п о ч н и к у Я.Л., С о р о к о п у д у Г.Б. и О О О «И з д а т е л ь с т в о «Э К С М О»)는 2010년 “New investment culture or structured products”라는 도서를 출판하였는데 원고는 이 책에 자신의 논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구하며, 유통 중인 도서의 사본을 회수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양 저작물이 유사한 문구를 포함하나, 저작물의 의미 부여와 표현의 성질이 서로 다르며, 독자층도 상이하고(원고의 저작물은 과학 저작물이며 피고의 저작물은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되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출처의 내용과 유사함을 들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저작물 간의 의미 부여와 표현의 성질, 타겟으로 하는 독자층이 다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하나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차용한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9.04. 2011 г. N 77-В10-9¹⁵⁾

원고(М и р о н о в а Л.И)는 자신의 사진저작물 12장을 피고(«Л и п е ц к о е и з д а т е л ь с т в о» 및 О А О «П К «О р и у с»)가 앨범에 포함하여 출판하였음을 발견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도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로열티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책임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근거는 입증된 저작권 침해 사실이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았는지는 배상책임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14) Nikitin Law International - Determination of the Judicial Collegium for Civil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April 9, 2013 N 5-KG13-2, 2020

<http://ncglaw.ru/index.php/ru/node/100>, 최종방문일 2021.2.22.

15) Nikitin Law International - Определение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апреля 2011 г. N 77-В10-9, 2020

<http://ncglaw.ru/index.php/ru/node/104>, 최종방문일 2021.2.22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1.06. 2015 г. N 309-ЭС14-7875¹⁶⁾

원고(Э д е л ь в е й с)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Masha and the Bear”에 등장하는 7인의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피고 (В о л е г о в у Н и к о л а ю А л е к с а н д р о в и ч у)가 침해하였음을 들어 각 캐릭터별로 1만 루블, 총 7만 루블의 배상액과 기타 비용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캐릭터 7인에 대한 독점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일부인 캐릭터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하나의 저작물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1만 루블의 배상액만을 인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러시아 저작권법 상 저작권은 캐릭터에게도 미칠 수 있으며 캐릭터가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캐릭터도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보호와 별개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16) <http://ipcmagazine.ru/> - Персонаж может охраняться как объект авторского права независимо от сам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2015
(<http://ipcmagazine.ru/news/2634-news1538>); 최종방문일 2021.2.22.

<http://www.garant.ru/> - Определение СК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пор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от 11 июня 2015 г. N 309-ЭС14-7875 Суд отменил принятые ранее судебные решения по делу о взыскании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нарушение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и направил дело на нов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поскольку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дела суд не установил наличия признаков, позволяющих считать перечисленных истцом действующих героев персонажами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канцелярских товарах отдельных фрагментов сериал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этих героев - частями произведения, являющими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творческого труда. 2015

(<http://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70999086/?prime>). 최종방문일 2021.2.22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TEL. 1588-0190